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02-17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11도13730 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

나. 조세범처벌법위반

피 고 인 1. 가.

A

2. 가.

B

3. 나.

주식회사 드림파마(변경 후 상호 : 주식회사 한화베이스스)

상 고 인 검사

변 호 인 변호사 C, D, E, F, G, H

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1노33 판결

판 결 선 고 2015. 1. 29.

주 문

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, 주식회사 드림파마에 대한 부분



을 각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1. 구 조세법 처벌법(2010. 1. 1.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란,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,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.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,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,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,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다른 정도,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,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3도 13829 판결 등 참조).

2. 원심은, 피고인 A, B가 피고인 주식회사 드림파마(변경 후 상호 : 주식회사 한화



베이스스, 이하 '드림파마'라고 한다)의 자금을 병·의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후 그 지출한 자금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는 각종 비용 항목에 나누어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허위의 경비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마련한 행위가 구 조세법 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, 리베이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비율이 2~3%에 불과하고 첨부한 증빙자료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증빙자료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어 세무조사를 통한 리베이트의 적발이 비교적 용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, B의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,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. 1

3. 그러나 피고인 A, B의 행위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.

가. 기록에 의하면,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, B는 피고인 드림파마가 2년에 걸쳐 적어도 373억여 원을 병·의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, ② 피고인 A, B는 그와 같이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를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으로 산입되는 시장조사비, 홍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교통비 등 리베이트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지출한 것처럼 경비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, ③ 나아가 경비청구서에 리베이트 지출과는 무관한 간이영수증, 현금영수증 및 상품권 구매를 증빙하는 영수증 등 그 지출에 관한 일부 허위



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실, ④ 그 과정에서 피고인 A, B는 본사 직원 및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허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을 수시로 독려한 사실, ⑤ 그 후 피고인 드림과마는 리베이트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에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비청구서를 기초로 총계정원장 및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다음,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표준손익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류로 첨부하고 이에 맞추어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, ⑥ 경비청구서에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경비청구서의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그 경비의 명목과 일치하지 않고 경비의 지출이 아닌 단순한 구매 영수증이 첨부되었다고는 하지만, 세무공무원 5명이 동원된 이 사건 리베이트에 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대상인 경비청구서의 양이 매우 방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각 1개월 분량의 경비청구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, 남대문세무서는 2009. 12. 10. 범칙조사에 착수하여 2010. 1. 8.에야 피고인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, 그 후에도 2010. 2. 12.경까지 계속하여 범칙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.

나.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피고인 드림과마의 병·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지출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인 점, ② 그럼에도 피고인 A, B는 리베이트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되는 각종 항목에 분산 계상하였으므로, 이는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한 점, ③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금액 전체에 관한 허위의 경비청구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의도로 허위의 영수증까지 일부 첨부하였는데,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경비청구서에 첨부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비율이 전체 리베이트 금액의 2~3%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④ 리베이트 지출을 은



폐하기 위한 허위의 경비청구서와 영수증 등의 작성 및 수집을 위하여 본사직원과 각 지점 영업사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, ⑤ 리베이트를 지출한 기간 및 그 규모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범칙조사에 동원된 세무공무원의 인원 및 범칙조사 기간 등에 비추어 리베이트 비용의 적발이 매우 용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인 A,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.

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,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'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.

4.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, 드림파마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_____

주 심 대법관 이인복 _____

 대법관 김용덕 _____

 대법관 김소영 _____